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0
----------	------

제출연월일 : 2026. 2.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 「지방회계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2025. 12. 10. 시행)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금고지정 심의안건 대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나.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기준 교부·열람에 대한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다. 금고 약정 금리 공개 및 공개 방법 신설(안 제12조제5항)
- 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장관 보고사항을 사후 통보로 변경함(안 제15조제3항)
- 마. 대출 및 예금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 평가 방법 개선(안 별표)
 - 금고 지정 평가기준의 다른 평가항목 순위 간 편차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는 차등 적용 규정 삭제
- 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별표)
- 사. 기타 용어 및 형식 등 정비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신·구조문대조표: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2026.1.22.~2026.2.11.(20일간)

나. 의견내용: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부패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9. 참고사항: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를 “뜻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 “금고”라 한다)라 함은 시”를 “(이하 “금고”라 한다)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로, “지정한 「은행법」”을 “지정한 「은행법」”으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회계”라 함은”을 ““특별회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 자치단

체”를 “이란 시”로,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 시장”을 “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쌍방”을 “양쪽”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반수 이상이”를 “과반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고한다” 를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를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 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 을 “제2항” 으로, “계약해지, 계약” 을 “약정해지, 약정”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 를 “사후 통보” 로 한다.

-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편성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세원관리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세원관리과장 석 천 호
	팀 장 직위·성명	세입관리팀장 윤 성 미
	담당자 성명(전화)	윤 성 미 (031-790-539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u>에 따라 하남시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시금고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u>-----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u>시금고</u>” (이하 “<u>금고</u>” 라 한다)라 함은 <u>시의 소관 현금과 시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u>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u>지방회계법</u>」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p> <p>2. “<u>일반회계</u>” 라 함은 「<u>지방</u></p>	<p>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 각 호</u>----- ----.</p> <p>1. -----(이하 “<u>금고</u>” 라 한다)란 <u>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u>----- ----- ----- ----- ----- <u>지정한 「은행법」</u> ----- <u>「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u> ----- -----.</p> <p>2. -----란 「<u>지방재정법</u>」</p>

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 특정자
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된 회
계를 말한다.

4. “기금”이라 함은 자치단체
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
조 또는 다른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
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
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
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라 함은 시장
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
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 “적용범위”이라 함은 시의

제9조제1항-----
-----.

3. “특별회계”란 -----

-----.

4. ----이란 시-----
-----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

-----.

5. -----이란 -----

-----.

6. -----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양쪽-----

-----.

<삭 제>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경쟁
의 방법으로 시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금고
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로서 당해 금융기관을 금
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생략)

② · ③ (생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금고지정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 3. (생략)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조(금고지정) ① -----

-----.

1. -----
-- 해당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
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
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 과반수가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총괄하며 -----

-----.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
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
음)

② ----- 소집하려는 ---

-----.

③ -----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생략)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1조(금고지정 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110일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팀장이 --.

제9조(의견청취)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
-----.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금고지정 절차) ① -----

----- 공고
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
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2조(금고약정)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각종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제15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하며, 그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금고약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 계약해지, 계약 -----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편성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2. (생략)

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

----- 사후 통보-----.

1. 2. (현행과 같음)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1항 관련)

I.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총괄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2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7)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후 예금금리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 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위 등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반영 가능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6. 기타사항	소 계	2
	가. 탈석탄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나.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	(1) (1)

II.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항목 5(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한다.

□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가)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나)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 (다)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5점)
 - (라)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유동성, 2점)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2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7점)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이율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전산보안인증 결과와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융위 등 지역 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현금출연만 인정)

6. 기타사항 (2점)

가. 탈석탄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1점)

- 탈석탄 선언에 따른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 (1점)

- 친환경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투자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비교 : “지역조합”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 「지방회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2. 9.>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2025. 12. 10. 개정)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1] 목 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4]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영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1] 개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2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당해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5(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칩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1)	6. 기타사항(11) - 항목 가. 지역재투자 실적(3) - 세부항목 *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5) - 세부항목 *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금고 지정·운영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20년부터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가능 다. 0000(3)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5는 5%적용)

지 칩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 (1순위 2.0점, 2순위 1.9점, 최저순위 1.2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칩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p>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p>*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p> <p>*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p>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2) - 항목추가 <p>*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p> <p>*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p> <p>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6)</p> <p>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p>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 - 추가배점</p> <p>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7) - 추가배점</p> <p>다. 자치단체 대출금리(5) - 추가배점</p>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p> <p>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p>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p> <p>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p>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p> <p>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 추가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p>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 추가배점</p> <p>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 추가배점</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p>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p>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p>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p>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p>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p>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p> <p>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p>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p> <p>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 2014.3.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③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금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함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분할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4]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1]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금고약정의 공개

[1]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2] 협력사업비의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3] 금고 약정 금리 공개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자치단체 누리집과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7. 보 칙

[1]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 약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고나 자료 제출의 내용*·시기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함

* (예시)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등 자금 관리 필요 사항

[2] 재검토 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5 (8)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u>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u> ※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17 (7) (6)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18 (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22 (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u>금융위 등 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u>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5)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u>녹색금융 이행실적</u> * <u>탄소중립 기여도</u> * <u>주민 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u>	11	